

선	기관외 장
람	



제38호(호외) 2022. 10. 7.(금)

규 정

광양시 규정 제429호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

규 칙

광양시 규칙 제905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2323, 행정 2713)

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2년 10월 7일

광 양 시 장 정 인 화

광양시 규정 제429호

붙임 : 광양시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안전총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부	서	팀 명 칭	비고
본청	안전도시국	안 전 총 괄 과	안전기획, 사회재난, 자연재난, 하천관리, 중대재해	

별표 2 중 안전총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실·과	담당	분 장 사 무
안전총괄과	안전기획	1. ~ 30. (생 략)
	사회재난	31. ~ 46. (생 략)
	자연재난	47. ~ 68. (생 략)
	하천관리	69. ~ 80. (생 략)
	중대재해	81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운영
		8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, 총괄
		83 사업장 위험성 평가
		8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
		85 중대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
		86 도급·용역·위탁사업 현황점검 및 안전·보건기준 마련
		87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방지 지도
		88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
		89 안전·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
		90 중대시민재해 대상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사항 확인

실·과	담당	분 장 사 무	
		91	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
		92	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.이행
		93	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점검 및 결과 조치
		94	중대재해 비상대응계획 수립
		95	사업장 순회 및 지도점검
		96	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(광양시청 소속 사업장에 관한 사항
		97	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
		98	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
		99	u-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
		100	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
		101	부서 CCTV 통합 설치(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)
		102	부서 CCTV 통합 관리· 운영(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)
		103	CCTV 운영협의회 운영
		104	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
		105	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
		106	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
		107	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
		108	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

부 칙

**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
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**

2022년 10월 7일

광 양 시 장 정 인 화

광양시 규칙 제905호

붙임 :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안전총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실·과	분 장 사 무	
안전총괄과	1	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·조정
	2	과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
	3	과 소관 물품 출납에 관한 사항
	4	과 소관 예산 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
	5	안전관리 총괄계획 수립
	6	재난안전상황실 운영
	7	안전 전문교육 및 홍보
	8	안전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
	9	안전관리정책 총괄·조정
	10	재난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관리
	11	안전관리위원회 운영
	12	안전문화운동 추진
	13	지역 안전공동체 육성·지원
	14	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
	15	재난징후 및 안전모니터링 운영
	16	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
	17	안전관리자문단 및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
	18	안전점검의 날 운영
	19	재난대비 각종 훈련계획 수립
	20	민방위대 편성
	21	민방위대 교육, 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
	22	민방위 과태료 부과 및 징수
	23	민방위 시설장비 관리
	24	을지연습 계획수립

실·과	분 장 사 무	
	25	충무계획 수립(작성)
	26	비상대비업무(충무훈련, 인력동원, 동원자원 조사, 중점자원관리의 날) 추진
	27	주민신고망 관리
	28	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
	29	광양시의용소방대 활동 지원
	30	고위공직자 병역신고 및 관리
	31	사회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
	32	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추진
	33	계절별 사회재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
	34	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(사회재난)
	35	인적·사회적 재난 복구 대응 총괄
	36	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및 표본 안전점검
	37	시트법·특정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및 표본 안전점검
	38	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
	39	승강기 안전관리
	40	지역축제장 안전점검
	41	특별사법경찰 관리
	42	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활동 및 점검
	43	재난관리자원(NDMS) 시스템 관리
	44	사회재난 종합상황 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
	45	도민 안전점검청구제 운영
	46	재난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
	47	자연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
	48	자연재해·재난 복구계획 수립 추진
	49	자연재해·재난 피해시설물 긴급 복구
	50	계절별 자연재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
	51	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(자연재난)
	52	자연재해 예경보시설 종합계획 수립
	53	재난 예·경보시설 운영
	54	방재 시설물 점검
	55	우수유출저감시설 관련업무
	56	자연재해위험지역 조사 정비
	57	급경사지 조사 및 정비지구 지정 및 관리 사업시행
	58	저수지, 댐의 정비지구 지정 및 관리, 사업시행
	59	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

실·과	분 장 사 무	
	60	지역단위 자연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
	61	자연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 체제 구축
	62	자연재난대비 물자, 자원, 장비 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, 유형별 동원계획 운영
	63	자연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 구난 기관간 협조지원체계 구축
	64	각종 자연재난 종합, 분석 보고 및 유관기관간 협의 조정
	65	각종 자연재난대응훈련 계획수립 및 추진
	66	자연재해 구호업무
	67	재난관리기금 운용
	68	사전재해영향성 검토
	69	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
	70	생태하천 복원사업(국토교통부 소관)
	71	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
	72	공유수면 관리(하천소관)
	73	유선및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
	74	소하천,지방하천 점·사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
	75	하천감시 및 불법행위 단속
	76	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
	77	하천 배수문 설치 및 관리
	78	하천 기성제 정비 추진
	79	하천 시설물 유지관리(수리시설물 제외)
	80	비관리청 사업시행인가 협의사항 관리
	81	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운영
	82	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, 총괄
	83	사업장 위험성 평가
	84	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
	85	중대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
	86	도급,용역,위탁사업 현황점검 및 안전,보건기준 마련
	87	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,분석 및 재발방지 지도
	88	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
	89	안전,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
	90	중대시민재해 대상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사항 확인
	91	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
	92	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,이행
	93	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점검 및 결과 조치
	94	중대재해 비상대응계획 수립

실·과	분 장 사 무	
	95	사업장 순회 및 지도점검
	96	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(광양시청 소속 사업장)에 관한 사항
	97	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
	98	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
	99	u-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
	100	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
	101	부서 CCTV 통합 설치(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)
	102	부서 CCTV 통합 관리·운영(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)
	103	CCTV 운영협의회 운영
	104	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
	105	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
	106	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
	107	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
	108	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